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2019. 5. 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 1. 제출경위

-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제출일자: 2019년 5월 1일(수)
- 회부일자: 2019년 5월 3일(금)

## 2. 제출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 → 제38조제4항제1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 검토의견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 적용하여 감면하였으나, 해당 조문이 제38조제4항제1호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	른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삭제 <2018. 12. 24.>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